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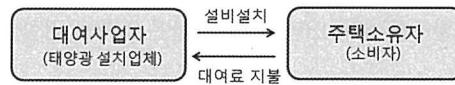
## 태양광 빌려쓰고, 전기료 줄이세요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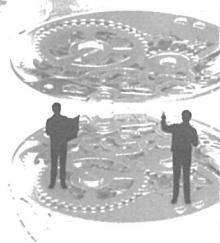
###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구조〉



- ◎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 ◎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

- ◎ (소비자)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
  -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임(초기 대여료의 1/2)
  - \* 월평균 450㎾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1천원, 8 ~ 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월간기준 : 전기료(106천원) - 대여료(70천원) - 설치후 전기료(15천원) = 21천원
- ◎ (대여사업자)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 ◎ (대상가구)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
-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 ◎ 금년에는 '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 (대상가구) 550㎾h 이상 → 350㎾h 이상 / (대여료 상한) 101천원 → 70천원 / (REP) 128원/kWh → 216원/kWh / (약정기간) 12년 → 7년



##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재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아

중대재해 다발기관은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토록 집중 관리할 방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5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하며

이들 주요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7개 기관에서 재해자·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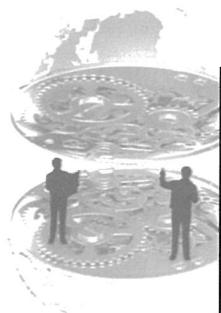
한편, '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3개 기관이며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LH공사 등 7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하여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나라장터, 건설기술진흥법시행 관련 업종 변동사항 공지

문의 | 나라장터 1588-0800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5.22.) 제1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함

따라서, 삭제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등록증으로 변경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5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신규업종 관련 사항〉

- 이번 건설기술진흥법시행에 따라 새로이 17개의 「건설기술용역업」이 신설됨
- 이 신설업종들 중 「업종코드 4966 건설기술용역업(종합)」의 경우, 나머지 16개 업종을 모두 포함하는 업종이므로 전체에 대한 등록이 가능함

〈업종코드 2014.07.11〉

삭제업종	변경업종
1001 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	
1002 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	
1003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	4969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1004 감리전문회사(설비감리)	
6204 품질검사전문기관(종합분야)	4970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 일반)
6205 품질검사전문기관(토목분야)	4971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 토목)
6206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분야)	4972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 건축)
6207 품질검사전문기관(특수분야)	4973~4982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 특수)

단, 특수분야의 경우 세부분야가 다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등록이 가능함